(건축-001) ○○아파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

공사명	○-○블록 아파트 건설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5월 22일(월) 16:5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경기도 남양주시	사고 종류	넘어짐(전도)	
구조물 손상	슬래브	인적피해	사망 3명, 부상 2명	
장비 손실	타워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용도 : 공동주택

○ 연면적 : 189,001 m²

규모: 지하 1층/지상 29층공사기간: 2016.5~2019.1

2) 사고경위

○ 902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마스트의 인상(Telescoping)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부품(요크) 파손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타워크레인 상부구조(지브 및 마스트 등)가 전도됨.

3) 사고원인

○ 수입산 순정 부품(요크)이 아닌 국내 철공소에서 제작한 비순정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됨.

나. 재발방지대책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에 의거하여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치·조립 및 해체순서,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의 작업 세부 계획이 수립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여 대칭되도록 차례로 결합, 분해하여야 한다.
-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.
- 크레인의 성능,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(應力)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, 기초부의 파손,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작업 전 일상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